

서울특별시립 금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60
----------	-----

2012년 6월 22일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6월 8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2년 6월 1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
보건복지위원회(2012년 6월 2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)

- 가. 시립 금천청소년쉼터는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청소년 시설로서,
- 나.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다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2년 (2013.01.01 ~ 2014.12.31)
- 위탁업무
 - 시립 금천청소년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 - 가출청소년의 보호·상담·선도·수련활동·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
 -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등
- 소요예산 : 635,000천원(2012년)
 - 1,000,000천원 (2013년),
 - 900,000천원 (2014년)
 - ※ 2013~2014년도 소요예산(예상): 이동쉼터 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 증액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(1) 동의안 제출 배경

- 시립 금천청소년쉼터는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로서,
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.

(2) 민간위탁 필요성 및 지속성에 대한 검토

-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3항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1항 임.
- 위탁업무는 시립 금천청소년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, 가출청소년의 보호·상담·선도·수련활동·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, 기타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위탁하려는 것임.
 - 구체적으로 일시보호활동(무료숙식 및 의료 서비스 제공, 가출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, 생활지도 등), 상담 프로그램(가출 청소년 및 학부모, 일반청소년,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, 가출 및 이성교제, 친구관계, 가족관계, 학교부적응 등을 상담할 수 있음), 조사연구활동(청소년가출 실태조사연구 등) 등을 함.
- 이러한 위탁에 대한 효과는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이 주된 관심의 초점이지만,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은 다른 분야에 비해 공급비용 절감보다는 ‘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’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.
 - 따라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,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지며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함.

〈참고〉 시립 4개 청소년쉼터(일시 · 신림 · 신림중기 · 금천)

구분/시설별	시립청소년일시쉼터	시립금천청소년쉼터
소재지	용산구 서계동 243-11	금천구 가산동 345-58 (가산문화센터내)
부지면적	255㎡	-
건축면적	130.38㎡	534㎡
건물층수	지하 1층, 지상 2층	가산문화센터내 2층 일부, 3층 사용
주요시설	사무실, 상담실, 휴게실, 등	사무실, 상담실, 교육실, 숙소, 식당, 생활지도실 등
운영법인	(재)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	(사)한국청소년연맹
위탁기간	2010.01.01~2012.12.31	2010.01.01~2012.12.31
개관일자	2007.12.21	1998.05.20

구분/시설별	시립신림청소년쉼터	시립신림중기청소년쉼터
소재지	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8-12 (임대)	서울 관악구 난곡동 646-222 (임대)
부지면적	-	-
건축면적	488.06㎡	153.35㎡
건물층수	대경빌딩 3층 사용	SH공사 매입임대다가구 1층 일부 및 23층 사용
주요시설	사무실, 상담실, 프로그램실, 숙소, 활동실, 휴게실 등	사무실, 정보이용실, 숙소, 휴게실 등
운영법인	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	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
위탁기간	2010.01.01~2012.12.31	2010.01.01~2012.12.31
개관일자	1998.05.18	2004.08.01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립 금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6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6월 8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시립금천청소년쉼터는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청소년시설로서,

나.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시립금천청소년쉼터
- 소재지 : 금천구 가산동 345-58 가산문화센터내 2층 일부, 3층
- 시설규모 : 534m²(임대)
- 개소일자 : 1998. 05. 20
- 이용대상 : 가출청소년(여, 정원 20명)
- 보호기간 : 3개월 내외 단기보호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2년 (2013.01.01 ~ 2014.12.31)

○ 위탁업무

- 시립 금천청소년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가출청소년의 보호·상담·선도·수련활동·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
-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기타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

○ 소요예산 : 635,000천원(2012년)

- 1,000,000천원 (2013년),
- 900,000천원 (2014년)

※ 2013~2014년도 소요예산(예상): 이동쉼터 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 증액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,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1998.03.01 ~ 2001.02.28(3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- 2차 : 2001.03.01 ~ 2004.02.29(3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- 3차 : 2004.03.01 ~ 2007.02.28(3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- 4차 : 2007.03.01 ~ 2010.02.28(3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- 5차 : 2010.03.01 ~ 2012.12.31(3년, (사)한국청소년연맹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市 직영시 근무연한 등 동일조건인 인력이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,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서비스 질 하락이 예견되며,

- 또한,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-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